

고 시

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5 - 179호

풍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

○ 2019. 2. 27. 조합설립인가 된 풍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,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12월 19일
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소규모재건축사업
- 나. 명 칭 : 풍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 : 원효로4가 109-4 외 1필지
- 나. 면 적: 5,171㎡

3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가. 명 칭 : 풍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
- 나. 사무소 소재지 : 용산구 원효로 25길 14 풍전아파트 나동 3호라인 지하

4. 조합설립인가일 : 2019. 02. 27.

5. 조합설립인가 취소일 : 2025. 12. 19.

6. 취소사유

가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 제23조(조합설립인가 등)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29조(사업시행계획인가)를 신청하지 아니함.

나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조치명령서의 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.